#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51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진선미・이학영・임오경

최기상 · 김문수 · 이기헌

이광희 · 조승래 · 강경숙

정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사가 미성년자인 학생에 대해 친밀감을 기반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그 사실을 은폐하는 '그루밍 성범죄'가 교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장관을 통보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 법률 제 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 본문 중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를 "사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여성 가족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 2. 국가기관등의 장(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여성 가족부장관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조치) ①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재 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 <신 설> 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 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 집의 원장,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의 장: 여성가

	족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u>&lt;신 설&gt;</u>	2. 국가기관등의 장(제1호에 해		
	당하는 기관의 장은 제외한		
	다): 여성가족부장관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